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1호서식]

(앞쪽)

목구조기술자 자격증
(종류 및 등급)

사 진 (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) 2.5㎝×3㎝	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

위 사람은 「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목구조기술자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산림청장 직인

85㎜×54㎜(백상지 120g/㎡)

(색상: 연초록색)

(뒤쪽)

연 월 일	기재사항 변경	확인 인

<유 의 사 항>

1. 목구조기술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며,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.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. 다만, 가목·다목·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.
  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구조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
   나. 위 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다.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
   라.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
   마. 과실로 그 업무(서류 작성을 포함한다)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
3.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
※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